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1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정준호, 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데,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명의 '문화도시'와 조문내용의 '문화시민도시'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통일함.
- 현재 장기간 미운영 중인 문화도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서 법령의 위임 부분을 삭제함(안 제1조).
- 나. 종합계획의 명칭을 "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"에서 "문화도시종합계획"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,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).
- 다. 제4장의 명칭을 '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'로 변경함.
- 라. 위원회의 명칭을 "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"에서 "문화도시위원회"로 변경함(안 제15조).
- 마.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위촉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규모 축소하도록 개정을 추진함(안 제16조).
- 바.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분과명 명시조항을 삭제하고,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적정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(안 제2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 중 “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”를 “시행령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”을 “(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”을 “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”을 각각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”를 “문화도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을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3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개인, 공동체, 지역, 도시,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”
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7명 이내”을 “5명 내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「문화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3조(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· 시행)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(이하 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, 문화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령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· 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“문화도시 종합계획”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계획에 <u>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</u>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권고하고,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4장 <u>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</u></p> <p>제15조(<u>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 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/p>	<p>-----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시장은 <u>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<u>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장 <u>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</u></p> <p>제15조(<u>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</u>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문화도시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을 심의·자문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</u>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3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21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개인, 공동체, 지역, 도시, 협치 분과</u>로 구성된 <u>분과위원회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<u>7명</u>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분과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5명</u> 내외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